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년월일 : 2023.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평창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나 4년에 1회 개최로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 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5.9.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3. 10. 11. ~ 23. 10.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반영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u><단서 신설></u></p> <p>③ <u>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u>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p> <p>③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세정과장 정 유 진
연락처	(033) 330 - 2279